

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800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4. 7. 1. 고성군수
나. 회부일자: 2024. 7. 4.
다. 상정·의결일자: 2024. 7. 17. 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개정이유

각종 위원회 보궐위원의 임명 및 임기를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보궐위원의 임명 및 임기 명시(안 제8조제3항)
나. 조례 제명이 잘못 인용된 40개 조례에 대해 부칙에서 함께 개정(부칙 제2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
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다. 합 의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·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16473(2024. 4. 19)]
라. 기 타
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4-758호
가) 예고기간: 2024. 4. 30. ~ 2024. 5. 20.(20일간)
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5) 비용추계(미첨부 사유)서: 붙임

5. 본문: 붙임과 같음

6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조례에서 미규정된 보궐위원의 임명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.

-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 - 보궐위원의 임명 및 임기 명시(안 제8조제3항)
 - 위원 중 결원 발생시 보궐위원을 임명할 수 있고,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였음.
 - 부칙 개정(부칙 제2조)
 - 제명이 잘못 인용된 조례에 대해 개정하였음.

-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, 위원회 위원의 결원 발생시 보궐위원의 임명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.

7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8. 토 론: 없음

9. 심사결과: 2024. 7. 17. 원안가결

10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